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2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추경호・金炳旭・김영식

한무경 · 김정재 · 서일준

박덕흠 • 이양수 • 김희국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필요가 있음.

또한,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 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 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 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 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벤처기업 주식양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2년간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더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2020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 억원으로 상향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 1항,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사망,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

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u>2020년 12월 31일</u> 까	<u>2023년 12월 31일</u>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	
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	
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	
	·	
	. ~ 6. (현행과 같음)	
제	~ 6. (현행과 같음)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세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세	.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 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u>3천만원</u> 이내의 금액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 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 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 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 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

2 <u>억원</u>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례) ①

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 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대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u>대통령</u>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생 략)

 ② ~ ⑧ (생 략)

1
1. <u>사망</u> ,
<u>사망,</u>
<u>사망,</u>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